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 / 63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판매부분-



광양주식회사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 / 63


목 차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7
1.1 CP 운영의 필요성	7
1.2 CP 핵심 8 대요소	7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8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8
2.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8

2. 공정거래법

1. 부당한 공동행위	10
1.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 40 조 제 1 항)	10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 40 조 제 5 항)	11
1.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 40 조 제 2 항)	15
1.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법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제 9 호)	15
1.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21
1.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21
1.7 법 위반 시 제재	22
2. 부당한 지원행위	22
2.1 부당한 지원행위	22
2.2 법 위반 시 제재	27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27
3.1 부당한 거래거절	27
3.2 차별적 취급	29
3.3 거래상 지위남용	31
3.4 구속조건부 거래	33
3.5 법 위반 시 제재	36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6
4.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36
4.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37
4.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37
4.4 법 위반 시 제재	40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 / 63

3. 약관법


1. 약관법의 적용범위	43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이란?	43
1.2 약관 규제의 취지	43
1.3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 2 조)	43
1.4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 2 조)	43
2. 약관법의 특성	43
2.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법 제 3 조)	43
2.2 개별약정의 우선 (법 제 4 조)	44
2.3 약관의 해석 (법 제 5 조)	44
2.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법 제 16 조)	44
3. 불공정한 약관조항	44
3.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법 제 6 조)	44
3.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 7 조)	45
3.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법 제 8 조)	45
3.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 9 조)	46
3.5 채무의 이행 (법 제 10 조)	46
3.6 고객의 권익보호 (법 제 11 조)	47
3.7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 12 조)	47
3.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 14 조)	48
3.9 법 위반 시 제재	49

4. 상생협력법


1. 납품대금연동제	51
1.1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	51
1.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수탁-위탁거래	51
1.3 용어의 정리	52
1.4 납품대금 연동 절차	53
1.5 법 위반 시 제재	55

5. 판매부분 행동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1. 행동 가이드라인	58
2. 목적	58
3. 방법	58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 / 63

4. 점검요령	58
5. 기타	58
6.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59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6 / 63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의 이해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7 / 63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광양(주)는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CP를 운영하고 있다.

1.1 CP 운영의 필요성

- 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을 송선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 나.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 다.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CP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CP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CP를 적극 도입하였다.
- 라.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자간의 부당공동행위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 마. CP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Incentive 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 CP 핵심 8대 요소

CP 8대 요소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 적극 지원
2	자율준수 관리자(CCO)의 임명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편람 작성, 배포
4	지속적 / 체계적 자율준수 교육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5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결과 보고
6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제재 조치 사규 제정 및 운용,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7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후 개선조치
8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8 / 63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공정거래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이 중 당사 사업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작성 및 배포한다.

2.2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운영규정을 정하고 규정에서 지침에 위임한 사항 및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 등 세부운영 지침을 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9 / 63

2. 공정거래법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0 / 63

1. 부당한 공동행위

1.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 40 조 제 1 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가. 부당한공동행위 규제 이유

카르텔은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는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 됨.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기술 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적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

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 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a. 둘 이상의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b. 합의의 존재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c. 경쟁제한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다. 유의사항

a.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b.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c.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d.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e.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f.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라. 합의의 개념

a.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간 의사 합의의 합치를 의미

(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b.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1 / 63

추가적인 정황 증거 (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 40 조 제 5 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함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가.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a.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ex)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ex)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ex)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 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ex)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분건 (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적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a.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2 / 63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 (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 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a. 외형상 일치

상기 가. 항의 a. 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b.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c.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외 복명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명할 수 있음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3 / 63

- a.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 (하단의 둘 중 어느 하나를 입증)
 -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 b.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 ex) 가격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
- ex)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 (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ex) 행정지도 (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심결례]

관련사례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의 담합행위 적발 제재
사실관계	<p>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상호 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경쟁 제한적인 합의에 이름.</p> <p>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p>
공정위판단	<p>종이 제조 시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중질 탄산칼슘 공급시장에서 담합을 적발, 엄중 제재함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2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에 코리아는 검찰에 고발 결정</p>

관련사례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 가격 담합행위 제재
사실관계	<p>현대제철 외 6개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 가격 담합하기 위하여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토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함.</p> <p>각 회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진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할인폭이 축소되는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실 거래가 형성됨</p>
공정위판단	<p>토목,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하고, 경쟁을 촉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 담합 참여 회사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영철강 등 5개 법인 검찰에 고발 결정</p>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4 / 63

관련사례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사실관계	<p>2012년부터 2022년까지,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738건의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을 진행하였음</p> <p>이 업체들은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견적서를 공유하며 들러리사에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실행함. 담합은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명시하지 않고 견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합의하기도 함</p>
공정위판단	<p>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업계의 담합 행위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10년 이상 지속해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고, 8개 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 결정</p>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5 / 63

[질의회신]

Q 가격 담합을 인정하는 예외 사례가 있나요?

A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관련 규정은 동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59조(무채재산권의 행사 행위) 및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법 적용 자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음.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의 규정에 따른 외항 화물 운송 사업자들 간의 운임 공동 결정 행위가 있음

Q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되나요?


A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 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 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라 하며 이 경우 제반 정황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1.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 40 조 제 2 항)


- 가.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나.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 40 조 제 2 항)
 - a.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b. 연구·기술개발
 - c. 거래조건의 합리화
 - d.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1.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법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9 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그 밖의 정보¹⁾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6 / 63

- 으로 제한하는 행위
 - 1) 「그 밖의 정보」 : 가격, 생산량외 ①상품·용역원가 ②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 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ex)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ex)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b.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할 경우
-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위법한 경우
 -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 ex) 행정기관이 가격인상률을 5%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 ex)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 ex)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여부, 시행절차나 방법등을 합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위법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 ①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 ②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7 / 63

■ 거래조건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등의 수준, 무료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일부터 대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등의 공급방식, 운송조건등을 제한하거나, AS기간, 내용, 방법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 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b.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동일화함으로써 증진되는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월등히 큰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행위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구매량, 구매가격, 구매하는 물품의 인도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구매량 또는 납품업체를 사업자 간에 할당하는 행위


b.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제품 수송차량을 공동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라. 거래지역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8 / 63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마.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공동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장비의 도입자금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바.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공동수행·관리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
 -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 간에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아.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가격), 경락자(가격), 입찰가격등을 결정 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¹⁾을 결정하는 행위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 ③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찰 관련 행동지침


- a.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 ① 사업참여 관련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주정보,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과 관련한 수주실적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19 / 63

- ③ 입찰가격의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 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한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 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 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b.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해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유의사항】
 -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 가격에 관한 정보를 타 사업자와 교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해 입찰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수준과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 수집,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b.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c.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해 유의사항】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0 / 63

- ①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 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a.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횟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차.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a.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 합의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간 합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지급 조건
 - 정보 교환 :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며 사업자단체 (협회, 협동조합 등), 제 3 의 사업자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포함 (단, 중간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할 경우는 정보 교환으로 보지 않음)
 - 합의 : 명시적 의사 연락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 포함
 - *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의 경우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경쟁제한 :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1 / 63

- 효율성 증대효과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b.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할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1.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법 제 42 조)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나. 과징금 (법 제 43 조, 시행령 [별표 6] 2.3)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¹⁾의 20%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¹⁾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의미함

다. 벌칙 (법 제 124 조 제 1 항 제 9 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의 벌금


1.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법 제 44 조, 시행령 제 51 조)

가. 과징금 면제 및 시정조치 면제 또는 감경

a.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 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2 / 63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나.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a.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당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 감면 제한
 - a.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하더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불가
- 라.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감면 취소
 - a.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1.7 법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2. 부당한 지원행위

2.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9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9)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 상품·용역, 인력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3 / 63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a.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 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무작위
- 정상 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실용상태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b. 지원행위 예시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할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실용상태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정상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4 / 63

금리 또는 일반 정상 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 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할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할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 3 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증자 전 제 1 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 1 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 1 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5 / 63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심결례]

관련사례	KPX 소속 계열회사 간 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진양산업은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하 "PPG")의 수출 영업권 (평가금액 3,677백만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스폰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하여 독점적 이윤을 향유
공정위판단	KPX 소속 진양산업(주)가 동일인(양규모)의 장남(양준영)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폰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35 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관련사례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사실관계	하이트진로는 경영전략본부장(총수 2세)이 서영이엔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엔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
공정위판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7억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각 1억원 및 1,000만원)함.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하였음

- c.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계열사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6 / 63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d.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력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 2 조 제 8 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7 / 63

2.2 법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 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 49 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 50 조)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 125 조 제 4 호)
-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 125 조 제 1 호)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3.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가. 공동의 거래거절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1.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a.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 계속의 거절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 40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 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 하다고 판단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8 / 63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 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등 채무불이행 가능성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 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 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것으로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1. 나)

a.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등 불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29 / 63

-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결례]

관련사례	마스크 가격 떨어지자 수령 거부하고 위탁 취소한 행위
사실관계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제조 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 기일 및 납품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할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공정위판단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음. 그러나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손해액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질의회신]

Q	A사의 요구로 제품을 2년간 A사에게만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B사가 같은 제품의 공급을 의뢰하였을 경우 이를 거절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A	공급자가 A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요구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다만,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거나 거래 거절 목적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여 경쟁 사업자가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 거래거절행위의 경쟁 제한 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3.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등 거래조건, 거래내용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가격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a.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등 가격에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0 / 63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 될 우려가 있는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거래조건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 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 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a.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a.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1 / 63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등 거래조건·거래내용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 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라. 집단적 차별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2. 라)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a.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여러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3.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2 / 63

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a. 지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 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 투자 여부 검토

b.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심결례]

관련사례	계약 기간 중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
사실관계	(주)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주)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하다 6개월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정식협약 및 통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
공정위판단	(주)포스코케미칼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 한 행위는 세강산업(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며,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함

나. 구입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가)

a.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다. 이익제공 강요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나)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a.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3 / 63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등 (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라. 판매목표 강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a.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 불이익 제공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라)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a.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4 / 63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바. 경영간섭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6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6. 마)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a.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3.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7. 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a.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 (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미칠 수 있음)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5 / 63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등으로 인해 A/S 활동등에 있어 배타 조건부 거래가 필수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등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시행령 제 52 조 [별표 2] 7. 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a.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6 / 63

3.5 법 위반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 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제 49 조)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제 50 조)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 125 조 제 4 호)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 시정조치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 125 조 제 1 호)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4.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제 2 조 제 3 호)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음

a. 시장점유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이상 사업자 (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 자 제외)

b.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c.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d.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7 / 63

- 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e.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f.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이상 (3개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g.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h.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4.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법 제 6 조)


- 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 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 (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자는 제외)
-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4.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 가. 가격남용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 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a.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b.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c.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d.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 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8 / 63

- e.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f.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나. 출고조절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a.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
(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 (계열회사 포함) 의 동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 (계열회사 포함) 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39 / 63

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a.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라.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 (법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 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a.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법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 시행령 제 9 조 제 5 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0 / 63

-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a.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b.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여 경쟁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 (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4 법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 손해배상책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1 / 63


[질의회신]

Q 시장지배적인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구분 기준이 뭔가요?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독점화 기도나 독점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경우를 위법성의 논거로 하여 구분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1회성의 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경우에 주로 적용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2 / 63

3. 약관법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3 / 63

1 약관법의 적용범위

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1.2 약관 규제의 취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1.3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 2 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가. 약관의 요건

-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다수 이어야 함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1.4 약관법상 약관이란? (법 제 2 조)

가. 판매

판매점 지정계약서, 수출제품 매매 기본계약서, 제품 공급(매매) 계약서, 수출해송 일반 약관, 운송계약 경쟁입찰 약관, 운송하역 일반계약규정, 내수 재고품(주문품) 약관 (e-Market), e-Transaction 약관 등

나. 구매


설비 및 기기구매 일반약관,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인터넷, 구매시스템 이용약관, 설비구매/시설공사/인터넷 구매 입찰 유의서, 원료구매 일반약관, 외주작업 계약 일반약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등

다. 기타

물품매각 계약 일반약관 등

2 약관법의 특성

2.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법 제 3 조)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4 / 63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00 막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가.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a.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b. 고객 요구 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c.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2.2 개별약정의 우선 (법 제 4 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2.3 약관의 해석 (법 제 5 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2.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법 제 16 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3 불공정한 약관조항

3.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원칙 (법 제 6 조)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나.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

- a.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b.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c.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다.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a.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b.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c.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d.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5 / 63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e. 소송 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f.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g.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h.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i.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j. 쌍방 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k.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3.2 면책조항의 금지 (법 제 7 조)

- 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a.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b.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c.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 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나.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a. 주차장 내 도난, 파손등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b.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 운송약관
 - c.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d.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e.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f.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g.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h.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매매약관

3.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법 제 8 조)

- 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a.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배상, 위약벌금등 명칭 여하를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6 / 63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b.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나.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a.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b.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제 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c.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도 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d.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3.4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 9 조)

- 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a.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b. 사업자에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c.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d.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e.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나.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해제·해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가능함
 - a.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실효약관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야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을 것임
- 다. 계속적 채권관계 (예. 전기·가스 공급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3.5 채무의 이행 (법 제 10 조)

- 가.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7 / 63


- a.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b.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나. 급부(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 다. 다음의 약관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 a.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조항
 - b. 계약 후 차량 인도시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하는 자동차 판매약관 조항
 - c.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운송약관 조항
 - d.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3.6 고객의 권익보호 (법 제 11 조)

- 가.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a.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b.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c.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d.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 하는 조항
- 나.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a. 항변권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
 - b. 상계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c.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 까지 그 물건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
 - d. 선택권 :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라. "기한의 이익" 이란 그 기한이 도래 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마. 약관으로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임

3.7 의사표시의 의제 (법 제 12 조)


- 가.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8 / 63

- a.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 있을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b.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c.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d.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 나.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다.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라.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마.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3.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법 제 14 조)

- 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임
- 나.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다.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하는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라. 입증책임을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49 / 63


3.9 법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와 과징금


-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벌칙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위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 : 5 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0 / 63

4. 상생협력법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1 / 63

1 납품대금연동제

1.1 납품대금 연동의 개념

"납품대금 연동"이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에 사용 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납품단가 포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1.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 수탁·위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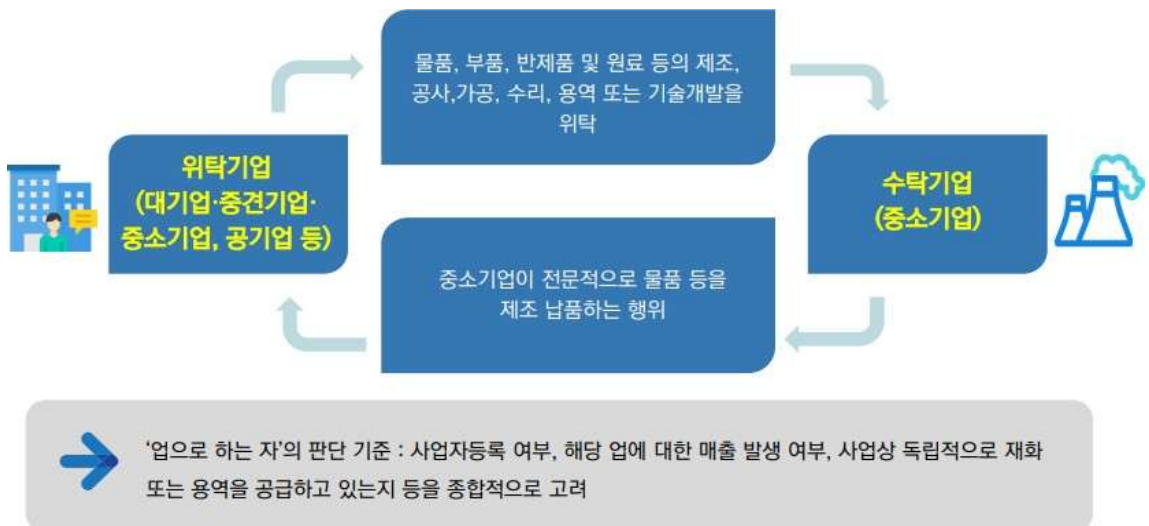
가.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함.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상생협력법" 제 21 조부터 제 23 조까지 제 25조 제 1 항 및 제 27 조 제 1 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매출액 등" 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6 조)

다. 수탁·위탁거래의 기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함.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2 / 63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계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함.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1.3 용어의 정리

- 가.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함.
 - a.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b.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할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됨.
- 나.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a.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됨.
- 다. "주요 원재료"란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 할 원재료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함.
 - a.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b.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c.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3 / 63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약정체결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조정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함.
- 마.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함.
 - ex)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I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인 경우, 22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I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에 따른 동 가격인 11,60,000원/ton 22년 1월 동의 기준가격
- 바.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함.
 - ex) 3%이상 또는 3%이하
- 사. "조정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함.
 - ex) 1개월, 분기
- 아.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함.
 - ex) 매 월 1일, 매 분기 말일
- 자.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함.

특별약정서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함.

 - ex) 매 월 1일, 매 분기 말일
- 차. "납품대금 연동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식을 말함.
 - ex) 조정될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5,000원

1.4 납품대금 연동 절차

- 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작성
 - a.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 부씩 보관함.
- 나. 납품대금의 조정
 - a.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함.
 - b.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함.
- 다. "납품단가 변동표"의 작성
 - a.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4 / 63

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 할 수 있음.

라.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a. 위탁기업은 특별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
- b.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 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서류의 비치

- a.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수탁-위탁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b. ex)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동 케이블 (CC-001)
2. 주요 원재료	동
3.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전기동고시가)
4. 주요원재료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개)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5,000원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 (조정일)이 도래 : (가정) 동 기준가격이 21년 12월 (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1월 (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2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2,000천원/ton × 2kg (=0.002ton) + 5,000원
= 24,000원 + 5,000원 = 29,000원
-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월 (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2년 2월 (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8.3%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단가 : 13,000천원/ton × 2kg (=0.002ton) + 5,000원
= 26,000원 + 5,000원 = 31,000원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5 / 63

<납품대금 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5,000원 (단위 : 개)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2년 2월 1일	12,000천원/ton	29,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2년 3월 1일	13,000천원/ton	31,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1.5 법 위반 시 제재

벌점 (제 28 조의 2)

-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약정서의 발급", 제 21 조의 2 1 항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22 조 의 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9 조 제 2 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벌칙 (제 41 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약정서의 발급", 제 21 조의 2 1 항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22 조, 제 22 조의 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위반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위·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권고 및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6 / 63

과태료 (제 43 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 21 조 제 4 항 거래상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위반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21 조 제 1 항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 할 때에 위탁내용에 대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39 조 제 1 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두지 아니하거나 그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 제 1 항 부터 제 4 항 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부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7 / 63

5. 판매부분 행동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크리스트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8 / 63

1. 광양(주) 판매부분 공정거래 행동 가이드 라인

■ 협력기업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협조 명목등을 사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무리한 거래조건 수용을 강요하거나 제안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익성 향상을 위한 부당한 가격인하 (감액), 협력기업 대상 강제적조사등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부당특약 (불공정약관)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요구 행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협력기업 대상 제도 신규 도입, 변경등의 경우 CP 절차를 준수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제도등 변경 시 CP 주관부서와 상의 하여 Risk 저감방안 검토 후 시행합니다.

■ 협력기업 대상 계약서(약관)의 임의변경 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관련 사항을 미리 정해 놓은 약관, 계약서, 지침, 입찰유의서등 계약내용을 자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2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목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

3 방법

해당 사업부 내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한 자율점검


4 점검요령

자율준수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위반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 X -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 자율준수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한다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59 / 63

5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_판매부분


5.1 공정거래법 Check List

점검항목	체크결과		
	○	△	X
부당한 공동행위			
1)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2)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지는 않는가?			
3)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는가?			
4) 공동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5)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6)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지는 않는가?			
7)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8) 공동으로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내용을 방해·제한하지 않는가?			
9)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60 / 63

5.2 약관법 Check List

점검항목	체크결과		
	○	△	X
가.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			
1)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2)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3) 계약당사자 간 소송발생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4)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철거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5)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은 아닌가?			
6)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7)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거나 전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나. 면책조항 금지			
1) 사업자나 이행보조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닌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개정번호	REV. 02
	편람 (판매부분)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61 / 63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아닌가?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다.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전보배상금, 위약벌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	--	--	--

라. 계약해제·해지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조항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아닌가? 아닌가?			
3)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아닌가?			
4)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아닌가?			

마. 채무이행

1)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나 책임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닌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항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아닌가?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62 / 63

바. 고객 권익보호

1) 법률에 따라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아닌가?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아닌가?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닌가?			

사. 의사표시 의제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는가? * 부작위 :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아닌가?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은 아닌가?			

아. 소송제기 금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닌가?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거나 관할법원을 자기의 소재지로 규정한 조항은 아닌가?			
3)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은 아닌가?			

5.3 상생협력법 Check List

점검항목	체크결과		
	○	△	X

가. 납품대금 연동제

1) 납품대금 연동의 방식 및 기준등 세부 사항은 수탁·위탁거래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가?			
--	--	--	--

 광양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문서번호	GY-CP-2402
	편람 (판매부분)	개정번호	REV. 02
		제·개정일자	2024. 08. 19.
		페이지	63 / 63

2) 약정체결 당시 예견 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 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분담하고 분담하고 있는가?			
3) 물품의 제조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이상 변동 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있는가?			
4) 물품등의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조정대금 반영시점" 반영시점"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5)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면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보관 하는가?			
6) 위탁·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 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고 있는가?			

5.4 중대재해처벌법 Check List

점검항목	체크결과		
	○	△	X
가. 중대재해처벌법			
1) 계약 조건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는가?			
2) 재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는가?			
3)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는가?			
4) 재해 발생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5)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받았는가?			
6)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7) 중대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제기 시 불이익 없이 적절한 대응을 받고 있는가?			